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번호 제 30호, 2004. 8. 4)

총 무 위 원 회

2004. 9. 17

1. 심사 경과

가. 2004. 8. 4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8. 17 :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4. 9. 14 : 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 개정 이유

-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찬조금 수입 기금조성 재원 삭제 (안 제3조 및 제10조)
- 융자금 이자율 하향 조정 (안 제5조제3항)
 - 이율 : 연5% → 3%, 연체이자율 : 연15% → 9%

3. 관계 법령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4.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개정조례(안) 제3조의 기금조성재원 중 찬조금수입을 삭제하고 기금조성재원을 시 출연금, 융자금의 회수액,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찬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며

- 동 조례 제5조3항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당초 연5% 에서 3%로하고 연체이율은 연15% 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적게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개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위원	질의요지	답변자	답변요지
김석관 위원	우리시는 1가구당 5,00만원한도 내에서 용자를해 주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할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가구당 용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했을 경우 상환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김현철 위원	진주시의 경우 용자금의 이자는 3%로하고 연체이자는 6%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	시중의 제2금융권이자가 7~8%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 결과 연체이자는 9%로 결정 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수정안 별첨)

7. 소수 의견 : 없 음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안년월일 : 2004. 9. 14

제안자 : 이인효위원외6인

1. 수정 이유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적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융자금 연체이자를 연9%에서 연 6%로 하향 조정

3. 수정안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연9%”를 “연6%”로 한다

4.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수 정(안)
제5조(융자금액등) ① ~ ② (생략) ③ .…. 다만,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터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등) ① ~ ② (생략) ③ .…. 다만,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9퍼센터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액등) ① ~ ② (생략) ③ .…. 다만,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터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